



기본종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2017년 둔포면 종합감사결과



감사위원회

목 차

- I. 감사 실시 개요 / 3
- II. 감사 결과 / 3
-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 / 6

I.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개요

- 대상기관 : 둔포면
- 감사기간 : 2017. 3. 21. - 3. 23.(3일간)
- 감사범위 : 2014. 4. 01.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열린감사팀장 등 6인(1반)

나. 감사중점사항

-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 각종 공사관련 부실공사 및 부조리 예방
- 복지업무 추진실태

II. 감사결과

가. 총평

-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둔포면 기관운영 전반 사항에 대한 적법·타당성과 각종 사업추진 실태, 예산집행, 주민복지 지원 업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아산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관련 외부인구 유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에서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용에 적극 대응하여 대다수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고의적인 횡령이나 유용사례는 없었으나,

- 일부 직원들이 관련규정이나 지침 숙지 미흡, 선례 답습적인 업무처리,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총 17건(예산·회계 2건, 주민자치 1건, 복지 4건, 일반행정 5건, 건설·농지 5건)의 미흡사항이 지적되었음.

나. 지적사항 현황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 적 사 항					특수 시책	수범 사례	건의 사항	민원 사항
계	시 정	주 의	권고	현지				
18	11	4	1	2	-	2	-	-

※ 지적은 17건이나 본처분11번의 처분2건(시정1, 권고1)으로 18건이 됨

□ 재정상 조치

(단위 : 원)

구 분	계	추 징	회 수	지 급	비 고
계	7,221,000	682,000	4,239,000	2,300,000	
본 처 분	7,221,000	682,000	4,239,000	2,300,000	
현지처분	-	-	-	-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계	중 징 계	경 징 계	경고·훈계	주 의	비 고
4	-	-	2	2	

다. 수범사례

① 동양고속버스 둔포 경유노선 개통

□ 추진배경

- 둔포지역 경유 노선 신설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틀은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2015. 01. 01. ~ 2015. 10. 20. : 고속버스 경유 주민의견 수렴
- 2015. 10. 20. : 고속버스 둔포 경유 요청서 접수
- 2015. 12. 02. : (주)동양고속 온양영업소 방문
- 2016. 08. 03. : 동양고속버스 둔포 경유 노선 개통

□ 기대효과

- 서울까지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겪어야 했던 둔포 면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 둔포면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끌어낸 성과로 면민들이 지역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됨.

② 둔포 면민의 날 행사 개최

□ 추진배경

- 둔포 면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둔포 건설 및 면민의 화합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경로잔치 개최로 노인공경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일 시 : 8.15.(매년 광복절)
- 장 소 : 둔포초등학교 , 둔포체육공원
- 행사내용 : 경로잔치, 축구경기, 화합경기,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 주 관 :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 기대효과

-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 마련
- 자매결연도시 및 기업체 초청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확인서 및 지적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비고
계	16건	시정 11 주의 4 권고 1	7,221,000 682,000 4,239,000 2,300,000	계 추징 회수 지급
1	○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처리 사항	시정		
2	○ 용역계약 관련	시정	665,000	추징
3	○ 세외수입금 체납 등 징수 관련	시정		
4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1,879,000	회수
5	○ 농지자격취득증명서 접수 및 수수료 징수 소홀	시정	17,000	추징
6	○ 제증명 수수료 징수 업무 소홀	주의		
7	○ 공사추진 관련서류 문서등록업무 소홀	주의		
8	○ ◇◇체육공원시설공사 추진 소홀	시정	2,160,000	회수
9	○ 하자보수보증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확인 소홀	주의		
10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관련	시정		
11	○ 장애인 서비스 신청 전산 미정리	시정 권고		
12	○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관련	시정		
13	○ 보훈대상자 수당 관련	시정	200,000 2,300,000	회수 지급
14	○ 민방위 업무 소홀	시정		
15	○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관련	주의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조치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비고
계	2건		주의 2		
1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업무 소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감기동대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2	산감기동대원 채용업무 소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감기동대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처리 사항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간이영수증 회계처리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건 수	10	2	5	3	
금 액	5,223	914	3,045	1,264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나. 주민자치위원회 세입 세출 통장발행 현황

통장명의	통장발행일	계좌번호	발행은행	비고
○○○	2013.1.23	351-△△△△-4373-73	◇◇◇◇	
○○○	2017.1.17	"	"	

다.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둔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5.2월부터 2017.3월 감사일 현재까지 경비를 집행하면서 간이영수증을 받아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면장과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전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포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세입세출을 위한 경비 통장을 둔포면자치위원회 명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중 10건 4,723천원을 집행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하고 있음에도 시정하도록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경비에 대한 세입·세출통장을 위원회 명의로 통장으로 만들지 않고 위원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통장을 위원회 명의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이영수증 회계처리 세부현황

연번	처리일	지출명	금 액 (천원)	비 고
계			5,223	
1	2015.02.29	댄스요가교실 강의실 오디오기기 구입	700	CDP
2	2015.03.24	사군자 교실 물품 구입	214	물감150,000, 파렛트 64,000
3	2016.01.13	서예교실 물품 지원	500	
4	2016.02.01	자치센터 온풍기 및 히터 수리	800	온풍기모터수리, 피터청 소, 밸브청소4, 출장비
5	2016.02.01	자치센터 소변기 수리	250	
6	2016.03.10	자치센터 청소기 구입	370	
7	2016.03.25	걷기대회 기념품 제작	1,125	타올 250개
8	2017.01.17	자치센터 물품구입	144	비누박스
9	2017.01.25	자치센터 1층 화장실 수도 누수공사	440	천성누수, 배관누수
10	2017.02.06	자치센터 물품 구입	680	쓰레기봉투*4개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용역계약 관련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665,000원(추 징)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천원)

연번	건 명	계 약 현 황				채권소화 현황		
		연도	계약일	거래처명	금액	적정	현황	미소화
계	8건				32,273	695	30	665
1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2015년	미계약	◇◇◇◇◇	2,112	45	0	45
		2016년	미계약	엘리베이터	2,112	45	0	45
		2017년	미계약	□□□(주)대전	2,112	45	0	45
2	주민센터 정수기 임차	2015년	2015.06.01	□□□ 주식회사	3,067	65	0	65
		2016년						
		2017년						
3	면사무소 정수기 임차	2015년	2015.06.01	□□□ 주식회사	1,534	30	0	30
		2016년						
		2017년						
4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15년	2015.01.02	(주)▽▽▽▽	3,432	75	0	75
		2016년	2016.01.02		3,432	75	0	75
5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면)	2017년	2017.01.02	(주)▽▽▽▽	1,716	35	0	35
6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테크노)	2017년	2017.01.02	(주)▽▽▽▽	1,716	35	5	30
7	중대본부 무인경비	2016년	2016.01.07	(주)◇◇◇◇	3,168	70	25	45
		2017년						
8	사무기기임차	2015년	2016.08.05	◎◎◎컴퓨터	1,800	40	0	40
		2016년	2016.01.04	☆☆컴	6,072	135	0	135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 1항 다호에 의하면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과장이 전결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신청하는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자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지역개발 채권의 구체적인 매입 대상과 기준을 별표1에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4항에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용역계약에는 대금 청구금액의100분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산출결과 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제3772호 2013.07.30)을 통하여 2013. 8.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대금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중 별표 2에 해당하는자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만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기기 임차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 665,000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소화한 채권 665,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세외수입금 체납 등 징수관련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원)

구분	회계과목	회계과목명	납부자	부과일자	체납액	비 고
계			4명		288,080	
1	41- 211448	기타사용료 (주민편익시 설사용료)	○ ○ ○	2013.04.15	100,000	
2			○ ○ ○	2013.04.15	168,000	
3			○ ○ ○	2013.07.12	20,000	
4			○○○○	2013.11.26	80	

나.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체납액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879,000원(추 정)

【지적내용】

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농지 쌀직불금 지급현황

(단위:㎡,천원)

지급년도	신청인	농지지번	면 적	소유자	계	고 정 직불금	변 동 직불금
계	6명	6필지	3,173		1,879	873	1,006
2014~ 2016	○○○	□□리 405-9	112	한국토지주택공사	74	35	39
2014~ 2016	○○○	□□리 434-10	316	한국토지주택공사	205	99	106
2014~ 2016	○○○	□□리 434-11	1,236	한국토지주택공사	802	386	416
2014~ 2016	○○○	□□리 434-12	422	한국토지주택공사	274	132	142
2015~ 2016	○○○	□□리 60-8	973	한국토지주택공사	512	209	303
2016	○○○	□□리 376-1	114	아산시	12	12	

나. 위법·부당내용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2. 지원자격 및 요건(지침 4쪽) 및 『쌀소득등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 이어야 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쌀소득등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하였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소득등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2015년 지침서 17쪽에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되어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위와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쌀직불금 신청대상자중 ○○○ 등 6명이 신청한 국·공유재산 농지가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은 무단점유 상태인데도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적격농지로 선정하여 1,879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쌀소득등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쌀직불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당지급한 직불금 1,879,000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자격취득증명서 접수 및 수수료 징수 소홀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7,000원(회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운영 현황

연도	수수료 징수 소홀	비고
2014년	17건	

나. 위법·부당 내용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56조(수수료)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수수료)제1항 및 제1호에 의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 1천원을 시군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2014년 1-12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17건의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농지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징수하지 않은 수수료 17,000원은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제증명 수수료 징수업무 소홀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수입징수결의서 날인 누락 현황

연 도	인증기 수입징수결의서		비 고
	결의기간	결재 날인누락	
계		32	
2014년	01. 02. ~ 10. 02.	27	
2015년	05. 27. ~ 12. 31.	2	
2016년	01. 12. ~ 02. 26.	3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수수료) 및 제5조(징수방법)에 의하여 제증명 등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에 의하여 읍면동장은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2건의 수입 징수관인 면장 등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사추진 관련서류 문서등록업무 소홀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번	사 업 명	도급금액 (천원)	사업기간	업무소홀 내역
1	◎◎2리 정주여건 개선공사	7,360	2014.07.10. ~ 2014.08.04.	-청구서(공사대금) 미접수
2	◇◇체육공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 연장 설치공사	14,920	2015.03.30. ~ 2015.04.06.	착공계와 준공신고서를 2015. 04. 14일 동일 날자에 문서등록하고도 -착공계에는 2015.04.14일로, 준공신고서에는 2015.04.08일로 표기
3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 설치공사	14,550	2015.06.08. ~ 2015.06.16.	-착공계와 준공신고서를 동일일자 (2015.06.16)에 문서등록
4	◇◇체육공원 주차장 포장공사	11,350	2015.12.15. ~ 2015.12.18.	-공사대금청구서 미접수

나. 위법·부당내용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016.04.26.이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 과정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또한, 같은규정 제6조 제1항에 문서¹⁾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

1) 공문서 :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 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제3조 제1호)

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 으로, 명시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제5호 가목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2리 정주여건 개선공사와 ◇◇체육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서(청구서)를 문서등록하지 않았으며
 - ◇◇체육공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 연장설치공사의 착공계와 준공신고서를 실제로는 동일날자(2015.04.14)에 문서를 등록하고도 → 착공계는 2015.04.14일에, 준공신고서는 2015.04.08일에 문서등록한 것으로 표기한 후, 준공신고서가 제출되기전인 2015.04.08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 설치공사에 대하여도 착공계와 준공신고서를 동일날자(2015.06.16)에 문서를 등록하고, 2015.06.22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공사추진 관련서류 접수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서류 문서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체육공원 시설보수공사」²⁾추진 소홀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천원)

예산편성 현황		실제 집행내역			비고	
예산서 부기명	예산액(천원)	집행사업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도급자
◇◇체육공원 시설보수공사	30,000	2건	29,470			
		◇◇체육공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 연장설치 공사	14,920	2015.03.30 ~ 20일간	□□□□산업 ○○○	2015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설치 공사	14,550	2015.06.05. ~ 20일간	“	“

※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착공계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시행 결의시 정해진 공사기간(20일)으로 표기하였음.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체육공원 시설보수공사」는 2015년 본예산에 3천만원이 예산 편성된 후 2015.02.06일 체육육성과에서 둔포면으로 “2015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재배정 통보”(체육육성과-929, 2015.2.6)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둔포면에서는 임의로 “◇◇체육공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 연장설치공사”와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 설치공사”로 분리하여 추진한 사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3조에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 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 로, 또한 제8조에는 “발주자는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둔포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2015.02.06일 체육육성과로 부터 ◇◇체육공원 시설보수공사 명목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재배정 받아, “◇◇체육공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 연장 설치공사” 와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 설치공사” 로 분리하여 동일업자인 □□□□산업 ○○○와 시차를 두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체육공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 연장 설치공사” 와 “◇◇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 설치공사” 를 견적서에 의거 공사도 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 견적서에 계상되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마무리 하여 2,160,000원(◇◇체육공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펜스연장 설치공사 : 1,090,000원,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드 설치공사 : 1,07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 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다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6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확인 소홀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붙임 내역과 같음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불임 현황과 같이 2014 ~ 2016년까지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하자 보수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 “◇◇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9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에 담보책임의 존속(보증)기간이 잘못 설정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서 담보책임 보증기간 설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자보증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현황

연번	연도	공사명	사업비(천원)			도 급 계 약 일	준 공 검 사 일	도급자	하자보증 기 간
			계	도급	관급				
총 계		10	171,886	90,251	81,635				
소 계	2014	5	60,080	36,245	23,835				
1	2014	◇◇1리 배수로 정비공사	13,829	9,520	4,309	2014.03.17	2014.04.08.	□□건설(○○)	14.4.9. ~ 16.4.8.
2	2014	◇◇6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9487	9,487		2014.04.16	2014.05.19.	□□건설(○○)	14.5.13. ~ 16.5.12.
3	2014	둔포면 관내 하천 수목제거공사	2,910	2,910		2015.05.01	2014.05.19.	□□건설(○○)	14.05.15. ~ 16.05.14.
4	2014	◇◇1리 하수도 정비공사	7,057	7,057		2014.05.09.	2014.05.20.	□□건설(○○)	14.5.27. ~ 16.5.26.
5	2014	◇◇2리 정주여건 개선공사	26,797	7,271	19,526	2014.07.09.	2014.08.06.	□□건설(○○)	14.8.7. ~ 16.8.6.
소 계	2015	1	13,607	6,264	7,343				
1	2015	◇◇3리 배수로 정비공사	13,607	6,264	7,343	2015.03.06.	2015.05.07.	□□□□건설(○○)	15.5.6. ~ 18.5.5.
소 계	2016	4	98,199	47,742	50,457				
1	2016	◇◇2리 배수로 정비공사	9,882	9,882		2016.03.07.	2016.03.25.	□□건설(○○)	16.3.24. ~ 19.3.25.
2	2016	둔포면 ◇◇2리 하수도 정비공사	43,732	18,296	25,436	2016.05.03.	2016.05.26.	□□건설(○○)	16.5.27. ~ 19.5.26.
3	2016	◇◇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6,066	5,191	10,875	2016.05.19.	2016.06.20.	□□건설(○○)	16.6.15. ~ 18.6.14.
4	2016	둔포면 ◇◇천 제방 도로 포장공사	28,519	14,373	14,146	2016.05.25.	2016.05.25.	□□건설(○○)	16.6.14. ~ 19.6.13.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관련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차량 변동 현황

차량 변동 현황			부적정 내역	시정내역
계	양도	폐차		
95	25	70	회수·폐기 미처리	회수·폐기 처리

※ 세부내역(별첨)

○ 부적정 발급 내역

연번	장애인	발급일	장애유형	부적정 내역	적정처리
1	○○○	2014. 11. 24.	신장5급	본인 주차가능	본인 주차불가
2	○○○	2014. 5. 30.	뇌병변5급	보호자 주차가능	보호자 주차불가

나.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②」의 「제4장(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지침 및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 별첨(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변동 현황)과 같이 ○○○외 24명의 차량명의를 양도되었으며, ○○○외 69명의 차량이 폐차되었음에도 감사 당일 현재까지 회수하여 폐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상기 현황과 같이 ○○○외 1명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주차가능”으로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②』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등 95건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처리하고 ○○○ 등 2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변동 현황

연번	성명 (장애인)	주민등록 번호	차량번호	표지번호	표지유형	차량변동현황
1	○○○	360503	55가0000	4520000201500272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2	○○○	410805	04나0000	4520000200600988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3	○○○	600414	42라0000	3910085200500035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4	○○○	650625	54주0000	4520000200601600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5	○○○	780422	13로0000	4060000201401722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6	○○○	541114	22보0000	4520000201100928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7	○○○	281123	27조0000	4520000201300160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8	○○○	310928	10주0000	4520000200601676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9	○○○	360407	04도0000	4520000200600984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10	○○○	361113	23무0000	4520000201000751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11	○○○	370602	03너0000	4520000200900217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12	○○○	390129	06로0000	4520000200600990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13	○○○	420617	54나0000	4520000200700112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14	○○○	430301	94러0000	4520000201100379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15	○○○	430420	28노0000	4520000201100468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16	○○○	511103	08가0000	4520000200601177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17	○○○	520808	69수0000	4520000201600113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18	○○○	570210	08무0000	4520000200601320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19	○○○	700622	78나0000	4520000201300886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20	○○○	720728	55가0000	4520055200500011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21	○○○	761210	04가0000	4520000201000489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양도)
22	○○○	450821	43우0000	4520000201001253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23	○○○	740617	46로0000	4520000201200793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24	○○○	410309	08무0000	4520000200601281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25	○○○	690217	45다0000	5660000201300087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양도)

연번	성명 (장애인)	주민등록 번호	차량번호	표지번호	표지유형	차량변동현황
26	○○○	430929	54주0000	4520055200400009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27	○○○	371114	04어0000	4520000201000411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28	○○○	330822	54라0000	4520000201300800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29	○○○	380313	56모0000	4520000201000772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30	○○○	480517	20라0000	4520000201200846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31	○○○	640430	충남34마0000	4520000201100504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32	○○○	691120	15수0000	4520000201300548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33	○○○	840112	경기66다0000	45200002004080027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34	○○○	210410	충남34라0000	4520000200400283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35	○○○	281101	충남1도0000	4520055200400029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36	○○○	331019	충남82나0000	4520000200400115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37	○○○	341209	충남34마0000	4520000200400177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38	○○○	350518	42보0000	4520000200800377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39	○○○	360212	충남34거0000	4520055200400036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40	○○○	360512	94러0000	4520055200400045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41	○○○	370802	충남34다0000	4520000201300080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42	○○○	380620	08수0000	4520000200700114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43	○○○	381001	충남34거0000	4520000200400068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44	○○○	381203	충남72가0000	4520000200400166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45	○○○	390811	73모0000	3510000201201402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46	○○○	420405	54나0000	4520000200800148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47	○○○	430920	충남1도0000	4520000200400042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48	○○○	431210	94마0000	4520000200900707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49	○○○	440322	경기42무0000	45200002004010054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50	○○○	440430	55가0000	4520000201000765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연번	성명 (장애인)	주민등록 번호	차량번호	표지번호	표지유형	차량변동현황
51	○○○	440501	52모0000	3910000200701062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52	○○○	440820	경기40도0000	3910069200400045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53	○○○	450615	06무0000	4520000201000547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54	○○○	450625	충남34마0000	4520000200400086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55	○○○	470419	경기40러0000	3910000200500343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56	○○○	471016	충남34거0000	4520000200400075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57	○○○	471205	54주0000	4520000200400085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58	○○○	490515	충남34더0000	4520000200400257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59	○○○	490530	충남34너0000	4520000200400165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60	○○○	500706	경기43나0000	52400002004010089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61	○○○	511116	충남30너0000	4520000200800689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62	○○○	520807	충남34마0000	4520000200901092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63	○○○	521217	55가0000	4520055200400065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64	○○○	550111	37수0000	4520000201000429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65	○○○	560614	10다0000	4520000200601609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66	○○○	561013	충남31더0000	4520000200400356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67	○○○	570327	충남34라0000	4520000200400178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68	○○○	610223	대전32고0000	3650000200400195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69	○○○	621021	충남34거0000	4520000200400126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0	○○○	650124	충남34거0000	4520055200400001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1	○○○	650807	경기50가0000	4010067200500003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2	○○○	651212	충남34더0000	4520055200400038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3	○○○	660325	충남34마0000	4520055200400014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74	○○○	670115	충남30가0000	4520000200400360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5	○○○	690403	70로0000	3100000201002199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연번	성명 (장애인)	주민등록 번호	차량번호	표지번호	표지유형	차량변동현황
76	○○○	750212	45다0000	5660000201000862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7	○○○	780128	07버0000	5660000201000656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8	○○○	800115	충남34다0000	4520000200400067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79	○○○	800209	01고0000	40500002004030012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0	○○○	800625	11라0000	3480000200700567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1	○○○	801127	80로0000	3910000201401633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2	○○○	830227	경기43다0000	39300002004020075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3	○○○	830330	충남30마0000	532000020080000024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4	○○○	970509	54가0000	4520058200400001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5	○○○	750705	경북41도0000	5220000200900349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6	○○○	720319	15수0000	3750000201300956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7	○○○	771223	46거0000	4520000201100572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88	○○○	420718	94루0000	4520000201000299	장애인 보호자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89	○○○	470109	인천34로0000	3550000200600633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90	○○○	570725	39조0000	3840000201100276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91	○○○	610921	서울80다0000	3910000201300709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92	○○○	611226	인천32고0000	3520025200400015	장애인 본인용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93	○○○	620214	서울52모0000	3160043200400048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94	○○○	650910	경기40노0000	3910085200500077	장애인 보호자 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95	○○○	720305	94다0000	4520000200601103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 서비스 신청 전산 미정리

【부 서 명】 둔 포 면, 경로장애인과

【행 정 상】 시 정, 권 고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장애인 서비스 신청 관련 전산 미정리 내역

합계	장애인등록신청 등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발급
255	48	114	75	18

※ 세부내역(별첨)

나.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의 「제2장(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기타 행정사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해야 하고,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지침 「제2장(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에 의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이 있으면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즉시 전송처리해야 하며,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은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②」의 「제4장(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별첨(장애인 서비스 신청 관련 부적정 현황)과 같이 ○○○외 47명의 장애인등록신청(진단비 및 검사비 신청 포함), ○○○외 113명의 장애인복지(통합)카드 발급, ○○○외 74명의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외 17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과 관련하여 총 255건에 대하여 감사당일 현재까지 행복e음 전산을 정리(교부 등록 등)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서비스 신청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정리된 전산내역 255건에 대하여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장애인과장은

- 장애인 서비스 신청 전산 정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복-e음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관련 공문, 참석자명부, 사진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애인 서비스 신청 관련 전산 미정리 내역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1	20140303	20140303	○○○	40122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2	20140303	20140303	○○○	40122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3	20140304	20140304	○○○	40122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4	20140305	20140305	○○○	45030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5	20140305	20140305	○○○	45030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6	20140312	20140312	○○○	720726	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	"	"
7	20140313	20140313	○○○	690120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8	20140313	20140313	○○○	690120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9	20140326	20140326	○○○	730113	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	"	"
10	20140416	20140416	○○○	39110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11	20140416	20140416	○○○	39110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2	20140424	20140424	○○○	511124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3	20140428	20140428	○○○	77011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14	20140428	20140428	○○○	77011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5	20140429	20140429	○○○	760228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6	20140509	20140509	○○○	500128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7	20140512	20140512	○○○	53052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8	20140512	20140512	○○○	93021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19	20140512	20140512	○○○	93021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0	20140513	20140513	○○○	600525	장애인등록신청	"	"
21	20140520	20140520	○○○	311103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2	20140520	20140520	○○○	530315	장애인등록신청	"	"
23	20140521	20140521	○○○	390618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4	20140521	20140521	○○○	51060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5	20140528	20140528	○○○	64060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26	20140530	20140530	○○○	52120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27	20140530	20140530	○○○	09081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28	20140530	20140530	○○○	09081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9	20140530	20140530	○○○	48062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30	20140602	20140602	○○○	87010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31	20140602	20140602	○○○	87010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32	20140603	20140603	○○○	63081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33	20140605	20140605	○○○	360708	장애인등록신청	"	"
34	20140609	20140609	○○○	65033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35	20140610	20140610	○○○	51060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36	20140610	20140610	○○○	51060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37	20140616	20140616	○○○	731127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38	20140616	20140616	○○○	731127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39	20140618	20140618	○○○	940814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40	20140618	20140618	○○○	621226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41	20140623	20140623	○○○	530501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42	20140623	20140623	○○○	53050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43	20140627	20140627	○○○	93070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44	20140627	20140627	○○○	93070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45	20140630	20140630	○○○	60021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46	20140709	20140709	○○○	42063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47	20140710	20140710	○○○	31051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48	20140730	20140730	○○○	67031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49	20140813	20140813	○○○	550719	장애인등록신청	"	"
50	20140828	20140828	○○○	370210	장애인등록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51	20140905	20140905	○○○	311112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52	20141001	20141001	○○○	500601	장애인등록신청	"	"
53	20141007	20141007	○○○	43101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54	20141013	20141013	○○○	730117	장애인등록신청	"	"
55	20141017	20141017	○○○	390415	장애인등록신청	"	"
56	20141118	20141118	○○○	790129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57	20141128	20141128	○○○	60120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58	20141205	20141205	○○○	740103	장애인등록신청	"	"
59	20141208	20141208	○○○	640428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60	20141208	20141208	○○○	64030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61	20141209	20141209	○○○	61022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62	20141209	20141209	○○○	61022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63	20141215	20141215	○○○	581003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64	20141216	20141216	○○○	45052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65	20141216	20141216	○○○	45052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66	20141217	20141217	○○○	64030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67	20141219	20141219	○○○	450509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68	20141229	20141229	○○○	430102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69	20150106	20150106	○○○	780207	장애인등록신청	"	"
70	20150113	20150113	○○○	670926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 반납)신청	"	"
71	20150113	20150113	○○○	760514	장애인등록신청	"	"
72	20150116	20150116	○○○	721209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73	20150116	20150116	○○○	721209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 반납)신청	"	"
74	20150129	20150129	○○○	71112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75	20150129	20150129	○○○	71112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76	20150210	20150210	○○○	591220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77	20150226	20150226	○○○	610321	장애인등록신청	"	"
78	20150311	20150311	○○○	900604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79	20150316	20150316	○○○	59122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80	20150323	20150323	○○○	79022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81	20150323	20150323	○○○	79022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82	20150324	20150324	○○○	79022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83	20150409	20150409	○○○	580123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84	20150427	20150427	○○○	740302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85	20150504	20150504	○○○	490808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86	20150507	20150507	○○○	771108	장애인등록신청	"	"
87	20150513	20150513	○○○	470427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88	20150527	20150527	○○○	330310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89	20150528	20150528	○○○	611219	장애인등록신청	"	"
90	20150604	20150604	○○○	44050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91	20150611	20150611	○○○	630311	장애인등록신청	"	"
92	20150615	20150615	○○○	661130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93	20150701	20150701	○○○	44050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94	20150702	20150702	○○○	500614	장애인등록신청	"	"
95	20150703	20150703	○○○	380524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96	20150713	20150713	○○○	73050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97	20150714	20150714	○○○	540920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98	20150714	20150714	○○○	60102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99	20150714	20150714	○○○	56102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00	20150715	20150715	○○○	43030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101	20150715	20150715	○○○	430420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102	20150715	20150715	○○○	51111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03	20150727	20150727	○○○	58092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04	20150727	20150727	○○○	56051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05	20150804	20150804	○○○	760514	장애인등록신청	"	"
106	20150805	20150805	○○○	760514	장애인등록신청	"	"
107	20150807	20150807	○○○	690730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08	20150811	20150811	○○○	72020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09	20150812	20150812	○○○	331102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10	20150817	20150817	○○○	53071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11	20150821	20150821	○○○	040727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12	20150902	20150902	○○○	430325	장애인등록신청	"	"
113	20150902	20150902	○○○	581214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14	20150904	20150904	○○○	86061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15	20151001	20151001	○○○	480713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16	20151016	20151016	○○○	581128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17	20151023	20151023	○○○	340428	장애인등록신청	"	"
118	20151028	20151028	○○○	380509	장애인등록신청	"	"
119	20151110	20151110	○○○	570413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20	20151111	20151111	○○○	290802	장애인등록신청	"	"
121	20151114	20151114	○○○	451228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22	20151118	20151118	○○○	800509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23	20151119	20151123	○○○	430408	장애인등록신청	"	"
124	20151125	20151125	○○○	66090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25	20151125	20151125	○○○	311103	장애인등록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126	20151201	20151201	○○○	660710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127	20151228	20151228	○○○	590501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28	20151229	20151229	○○○	400204	장애인등록신청	"	"
129	20160108	20160108	○○○	55101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30	20160112	20160112	○○○	090815	장애인등록신청	"	"
131	20160118	20160118	○○○	311103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32	20160118	20160118	○○○	760228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33	20160119	20160119	○○○	440220	장애인등록신청	"	"
134	20160119	20160119	○○○	281222	장애인등록신청	"	"
135	20160122	20160122	○○○	72110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36	20160127	20160127	○○○	920107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37	20160203	20160203	○○○	44022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38	20160203	20160203	○○○	291012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39	20160203	20160203	○○○	821212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40	20160211	20160211	○○○	43043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41	20160211	20160211	○○○	43030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42	20160218	20160218	○○○	661130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43	20160219	20160219	○○○	580308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44	20160219	20160219	○○○	70112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45	20160223	20160223	○○○	830302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46	20160226	20160226	○○○	651101	장애인등록신청	"	"
147	20160302	20160302	○○○	640428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48	20160302	20160302	○○○	870425	장애인등록신청	"	"
149	20160304	20160304	○○○	260926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50	20160308	20160308	○○○	64060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51	20160309	20160309	○○○	571224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152	20160309	20160309	○○○	86091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153	20160309	20160309	○○○	42061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54	20160310	20160310	○○○	670103	장애인등록신청	"	"
155	20160311	20160311	○○○	530119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56	20160315	20160315	○○○	530503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57	20160322	20160322	○○○	450107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58	20160329	20160329	○○○	470120	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	"	"
159	20160329	20160329	○○○	470120	장애인등록신청	"	"
160	20160329	20160329	○○○	83092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61	20160330	20160330	○○○	460719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62	20160406	20160406	○○○	62121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63	20160411	20160411	○○○	500425	장애인등록신청	"	"
164	20160414	20160414	○○○	37043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65	20160414	20160414	○○○	47022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66	20160415	20160415	○○○	72110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67	20160418	20160418	○○○	52070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68	20160419	20160419	○○○	731127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69	20160419	20160419	○○○	470221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70	20160419	20160419	○○○	470802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71	20160420	20160420	○○○	730506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72	20160421	20160421	○○○	60040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73	20160425	20160425	○○○	450107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74	20160426	20160426	○○○	360212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74	20160426	20160426	○○○	360212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75	20160503	20160503	○○○	721002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76	20160504	20160504	○○○	431203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177	20160516	20160516	○○○	550303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178	20160516	20160516	○○○	550303	장애인등록신청	"	"
179	20160519	20160519	○○○	590720	장애인등록신청	"	"
180	20160520	20160520	○○○	790118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81	20160523	20160523	○○○	510807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82	20160524	20160524	○○○	250914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83	20160602	20160602	○○○	011128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84	20160607	20160607	○○○	460719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85	20160607	20160607	○○○	43032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86	20160609	20160609	○○○	490307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87	20160609	20160609	○○○	50042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188	20160610	20160610	○○○	891203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89	20160614	20160614	○○○	800509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재발급) 신청	"	"
190	20160614	20160614	○○○	800509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91	20160616	20160616	○○○	800509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92	20160616	20160616	○○○	380519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93	20160617	20160617	○○○	501124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94	20160628	20160628	○○○	600401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95	20160630	20160630	○○○	69080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96	20160706	20160706	○○○	701116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197	20160715	20160715	○○○	450809	장애인등록신청	"	"
198	20160719	20160719	○○○	70111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199	20160805	20160805	○○○	800509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00	20160808	20160808	○○○	601227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01	20160912	20160912	○○○	460719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02	20160912	20160912	○○○	630804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203	20160920	20160920	○○○	530310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204	20160920	20160920	○○○	93070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05	20160927	20160927	○○○	391004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06	20160928	20160928	○○○	391004	장애인등록신청	"	"
207	20160930	20160930	○○○	43081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08	20161017	20161017	○○○	610913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09	20161019	20161019	○○○	521005	장애인등록신청	"	"
210	20161019	20161019	○○○	43011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11	20161024	20161024	○○○	610324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12	20161028	20161028	○○○	73121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13	20161116	20161116	○○○	800618	장애인등록신청	"	"
214	20161116	20161116	○○○	04012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15	20161116	20161116	○○○	600312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16	20161125	20161125	○○○	820116	장애인등록신청	"	"
217	20161205	20161205	○○○	75022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18	20161206	20161206	○○○	581121	장애인등록신청	"	"
219	20161209	20161209	○○○	360212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20	20161210	20161210	○○○	371114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21	20161212	20161212	○○○	55031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22	20161212	20161212	○○○	520420	장애인등록신청	"	"
223	20161212	20161212	○○○	72110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24	20161214	20161214	○○○	430102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25	20161220	20161220	○○○	60102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26	20161220	20161220	○○○	960416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27	20161221	20161221	○○○	45020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28	20161221	20161221	○○○	971102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비스	신청상태	부적정 내역
229	20170104	20170104	○○○	340207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접수	전산 미정리 (교부등록 등)
230	20170105	20170105	○○○	520204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31	20170109	20170109	○○○	66011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32	20170109	20170109	○○○	670311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33	20170110	20170110	○○○	621021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34	20170111	20170111	○○○	830401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35	20170112	20170112	○○○	460122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36	20170117	20170117	○○○	780422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37	20170118	20170118	○○○	820616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38	20170120	20170120	○○○	59083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39	20170123	20170123	○○○	691231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	"	"
240	20170123	20170123	○○○	62092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41	20170131	20170131	○○○	561013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42	20170202	20170202	○○○	430102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43	20170202	20170202	○○○	561013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44	20170203	20170203	○○○	690803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45	20170203	20170203	○○○	810613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46	20170206	20170206	○○○	460813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47	20170210	20170210	○○○	64043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48	20170215	20170215	○○○	80011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49	20170215	20170215	○○○	24050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50	20170216	20170216	○○○	500425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51	20170217	20170217	○○○	450615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52	20170220	20170220	○○○	430408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53	20170220	20170220	○○○	641110	장애인복지카드신청	"	"
254	20170220	20170220	○○○	550122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255	20170221	20170221	○○○	040208	장애인통합카드발급(재발급,반납)신청	"	"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관련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내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말소일자	말소사유	주장애	장애 등급	부적정 내역
1	○○○	380225-1	☆☆길 33-3	'15.08.15.	사망	호흡기	3급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2	○○○	290313-2	★★★★★ 58-5, ○○○동 ○○○○호	'16.03.06.	"	청각(청력)	5급	"
3	○○○	380509-1	☆☆길 46	'16.03.29.	"	뇌병변	5급	"
4	○○○	340827-2	☆☆길27번길 3-6	'16.05.03.	"	뇌병변	2급	"
5	○○○	600517-1	★★★로620번길 9-4	'16.05.27.	등급외 (상태호전)	호흡기	3급	"
6	○○○	400828-2	☆☆길129번길 29	'16.06.03.	사망	뇌병변	1급	"
7	○○○	330210-1	★★★로1120번길 9-30	'16.06.13.	"	청각(청력)	4급	"
8	○○○	430929-1	☆☆☆길 26-7	'16.12.18.	"	호흡기	1급	"
9	○○○	290802-2	★★★로248번길 74-9	'16.12.19.	"	뇌병변	1급	"

나.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의 「제2장(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에 의하면 장애인등록증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

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기존 발급된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 상기 내역과 같이 ○○○외 8명이 사망, 장애호전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감사당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않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등록증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훈대상자 수당 관련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500,000원[200,000원(회수), 2,300,000원(지급)]

【지적내용】

가.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부적정 현황

참전유공자 수당(환수)		보훈대상자 장례비 등(지급)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명	200천원	4명	2,300천원

※ 세부내역(별첨)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해 아산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0,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의해 관외전출자, 수령거부자, 사망자등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4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2항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6조(사망위로금) 제1항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복지 지원등) 제3호에 의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복지지원)에 “생존 애국지사는 1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는 50만원” 을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불임 현황과 같이 ○○○외 1명이 사망한 후에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였고, ○○○외 3명이 사망하였음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등 2명에게 참전유공자수당 200,000원을 회수하고, ○○○ 등 4명에게 장례비 및 위로금 2,300,000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방위 업무 소홀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현황 : 붙임1
- 지역민방위민방위대 구성 현황 : 붙임2
- 민방위관련 물자 관리 현황 : 붙임3

나. 위법·부당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에 따라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5명 이상 8명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민

방위관련 물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비축, 설치,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에 의거 민방위 준비를 위한 필요물자를 갖추어야 하며 시행규칙에 명기된 물자 등을 구비하고, 미 구비 및 노후된 물자(방독면 등)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비용을 지원받아 민방위 준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미구성(2015년, 2016년)하였고, 민방위대 신규 편성 인원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편성사실과 임무 등 고지하여야 함에도 2016년에는 고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방위장비관리대장을 미비치 및 미작성 하였고, 민방위자재의 현황 및 작동여부를 파악하여 사용불가 및 부족한 민방위자재를 구비 및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점까지 관리하지 않는 등 민방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신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며, 민방위대원에게 편성사실과 임무 등을 고지하고, 민방위 자재를 교체 및 수리하여 적정 관리하시기 바라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성여부	위원수	비 고
2014년	여	5	
2015년	부	-	
2016년	부	-	
2017년	여	5	

[붙임 2] 지역민방위민방위대 구성 현황

(단위 : 명)

연 도	편성 현황								비고
	계	신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이상	
계	4,136	442	437	439	432	427	384	1,575	
2014년	797	88	103	84	68	73	63	318	
2015년	860	97	86	109	91	80	80	317	
2016년	1,102	112	119	109	122	124	98	418	임무미고지
2017년	1,377	145	129	137	151	150	143	522	

[붙임 3] 민방위관련 물자 관리 현황

자재·공구명	실수량	대장관리	보관장소	비 고
메가폰	22	미관리	일반창고	
지휘용엠프	5			
응급처치세트	21			
개인방호	4			
구명환	5			
구명조끼	3			
로프	3			
농건용공구	19			
방독우의	18			
방독장갑	36			
방독장화	17			
오염표지판	3			
탐지키트	0			
피부제독키트	0			
휴대용조명등	10			
일반방독면	531			
국민방독면	0			
한국형방독면	0			
환자용 들것	22			
교통신호봉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관련

【부 서 명】 둔 포 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입금지연 현황

(단위 : 원)

년 도	지 연 횟 수			지 연 일	비 고
	소계	스티커	마대		
합 계	91	74	17	1일~8일	
2014	-	-	-	-	대장미기재 2건
2015	54	44	10	1일~8일	금액불일치 1건
2016	37	30	7	1일~5일	

나. 위법·부당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시장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를 위임받은 둔포면에서는 대형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에

관련하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폐기물스티커”), 불연성
마대 등의 수불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판매대금 징수결의 및
납부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둔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불연성마대 판매대금의 경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폐기물 및 불연성마대 수납금의 납입기한을 지연(1일~8일)하였으며
(91건), 판매내역 대장미기재 2건, 대장상 금액과 세입불일치 1건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둔포면장은

- 『폐기물관리법』 및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수
불사항, 징수결의, 납부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지방회계
법』을 준수하여 판매대금이 규정기일 내 세입처리되어 향후 같은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